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소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01

발의년월일 : 2018년 8월 16일
발 의 자 : 김소영 의원(1명)
찬 성 자 : 김창원, 최영주, 안광석,
김춘례, 박기재, 노승재,
황규복, 문병훈, 김인호 의원(9명)

1. 제안이유

- 2018년 평창동계패럴림픽의 성공 이후 장애인체육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장애인체육 활성화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됨.
- 지속가능한 장애인체육 기반 조성을 위해 일상에서 즐기는 생활밀착형 장애인 체육시설 확대와 장애인 체육활동 참여기회 확대를 위한 지원 강화가 요구되는 바, 체육진흥 기금 용도에 장애인체육 사업이나 활동 지원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 및 가맹단체의 육성을 위한 사업을 명시하고, 그 외 체육진흥과 관련된 사업이나 활동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안 제4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등
- 나. 예산조치 : 비대상 사유서 첨부
-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안 제4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7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 및 가맹단체의 육성을 위한 사업

같은 조 제5호(종전의 제4호) 본문 중 “전국체육대회, 국제대회”를 “전국체육대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국제대회”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는 용도에 사용한다.</p> <p>1. ~ 2. (생략)</p> <p style="text-align: right; padding-right: 20px;">〈신 설〉</p> <p>3. (생략)</p> <p>4. <u>전국체육대회, 국제대회 개최 및 참가사업</u></p> <p>5. ~ 6. (생략)</p>	<p>제4조(기금의 용도) ----- ----- -----.</p> <p>1. ~ 2. (현행과 같음)</p> <p>3. <u>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 및 가맹단체의 육성을 위한 사업</u></p> <p>4. (현행 제3호와 같음)</p> <p>5. <u>전국체육대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국제대회 개최 및 참가사업</u></p> <p>6. ~ 7. (현행 제5호~제6호와 같음)</p>